

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지침

제정 2013. 9. 26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“기정원” 이라 한다)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정한 사항(보상금·지급기준·산정방식·지급시기)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보상금 운영기준) 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정원으로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해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누적 관리한다.

②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신고하여 기정원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주 발명자 1인과 부 발명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부담 및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부담 및 기여도는 직무발명 신고시 명기하도록 한다.

제3조 (보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등)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정원으로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등록보상금 :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내·국외를 포함하며,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[표1]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2. 실시·처분보상금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,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[표1]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
[표1 :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기준]

구분		지급 기준		지급 시기
등록 보상금	특허, 실용신안, 의장권	국외	500,000원	등록후 3개월 이내
		국내	300,000원	
실시·처분 보상금	직접 실시	순이익 1,000만원 이하	기준금액 x 30%	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
		순이익 1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기준금액 x 20% + 100만원	
		순이익 5,000만원 초과	기준금액 x 10% + 200만원	
	양도 또는 실시하여	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 액 1,000만원 이하	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x 30%	
		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 입액 1,000만원 초과 5,000 만원 이하	(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- 1,000만원) x 20% + 300만원	
		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 액 5,000만원 초과	(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- 5,000만원) x 10% + 1,100만원	

* 단, 실시·처분에 대한 보상은 특허법 제 88조(특허권의 존속기간) 1항에 의거하여 특허권 존속기간(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)에 한하여 지급 한다.

부 칙(2013. 9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